

강원도

시정(회수)

제 목 휴가사용,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각 과 및 안전센터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21.1.20.)」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前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7. 6.~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 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119안전센터 소방○ ○○○의 경우 교육입교는 공가사유에 해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출장 전일(前日) 당번근무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 하여야 함에도, 야간 공가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연가가산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³⁾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 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2)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3)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 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과전·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 대상기간(2017. 6.~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결과 총 20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위 사실에 대하여 해당직원 전수조사 및 재 확인한바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입합니다.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별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휴가·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21명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및 수당 1.173.7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회수)

제 목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급여 및 수당 지급, 세출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특정업무경비 지출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4” 에 의하면,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4)

(단위: 원)

특정업무경비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3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2”, “5-2. 특정업무경비(204-03)”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7. 6.~현재) 동안 휴직, 휴가, 교육입교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 8명에게 방호활동비 1,177,510원, 1명에게 구조구급활동비 215,5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나. 급량비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식비를 지급할 경우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자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7. 6.~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15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가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 등의 사유로 110,000원을 중복 지급하였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는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은 결혼 또는 사망,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고,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 등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2017. 6.~현재) 동안 ○○소방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경우 지급대상은 결혼 또는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직원 자녀출산을 이유로 화분 및 꽃다발을 총 7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6회에 걸쳐 4,840천 원을 집행하였으나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휴가, 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1,393,010원과 관외출장여비와 중복지급된 급량비 11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 통보

제 목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산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과)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편성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표1> “○○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편성 현황” 과 같다.

<표1> ○○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01-03)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23년 산출식)
계	446,489	415,636	339,062	459,878	-
소집수당	177,293	203,904	154,484	205,978	정원×60%×11,920원
피복비	81,000	42,000	23,814	42,000	정원×70,000원

동절기 야간근무 운영	34,560	28,661	51,495	68,660	남성대수×11,920원×2명× 2시간×120일
회의교육 등 출장여비	82,944	66,960	44,640	74,400	(140,000원×정원×0.6)+ (20,000원×정원×2회)
대화의 시간 운영	3,672	2,588	2,880	2,880	20,000원×2명×4회 ×의소대수
의소대 행사운영비	3,060	2,754	3,060	3,060	의소대수×170,000원
의소대 자녀장학금	57,960	60,480	50,400	50,400	1,000,000원×정원 7% ×2회×60%
차량지원비	6,000	8,289	8,289	12,500	2,500,000원×보유대수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법률)」 제3조, 제35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지원 경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규모있게 사용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동절기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중단 초래

○○소방서(○○○○과)에서는 2022. 10. 31. ‘2022년 겨울철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2022. 11.부터 2023. 2.까지 출동 소방력 보강을 위해 5개 남성대를 대상으로 20:00부터 24:00까지 1일 4명씩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취약대상인 재래시장 등 방화순찰을 실시하고, 6개 여성대의 경우 월 4회(지역별 5일장) 불조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후 활동 결과를 취합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소방서(○○○○과)에서는 2022. 12. 8. 겨울철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화재진압 보조활동 및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체인형 ○○○을 구입하여 전 대원에게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16,830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었다.

○○○을 구입한 후 2022. 12. 14. 의용소방대 예산부족으로 2022. 12. 14.부터 12. 31.까지 청사 대기근무, 방화순찰 불조심 캠페인을 일시 정지한다는 공문(○○○○과-○○○○호)을 시행하였고, 2022. 12. 21. 계획을 변경하여 2022. 12. 23.부터 12. 31.까지 남성대 대기근무 및 방화순찰을 1일 2시간(당초 4시간), 2명(당초 4명)으로 축소 실시하고, 여성대 불조심 홍보 캠페인을 1회(당초 4회)만 실시하도록 공문(○○○○과-○○○○)을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을 구입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모하였고, 그 결과 겨울철 의용소방대 대기근무, 방화순찰, 불조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축소 실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을 통해 화재 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다.

2)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대화의 시간 운영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산 중 대화의 시간 운영 부기는 20,000원×2명×4회×의소대 수로 산출되었고, 예산편성 목적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활동격려 등 간담회를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 다른 부기의 항목과 달리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경우 예산편성액 2,880천원 보다 144% 초과하여 4,152천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소방○ ○○○은 2022.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10개월)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 결재권자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1. 3.까지(1년) ○○소방서 ○○○○과 ○○○○○○○으로 근무하면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 검토자로, ○○소방서 ○○○○○○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1. 3.까지(6개월) ○○소방서 ○○○○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2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과 관련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을 구입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모하였고, 그 결과 겨울철 의용소방대 대기근무, 방화순찰, 불조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축소 실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 대화의 시간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액 2,880천원 보다 144% 초과하여 4,152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재정법(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방○ ○○○과 소방○ ○○○은 ‘5. 의용소방대 운영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 시정(회수), 권고

제 목 의용소방대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과)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20년	18	509	7	241	5	93	6	175
2021년	18	513	7	246	5	92	6	175
2022년	18	499	7	241	5	89	6	169
2023년	18	466	7	227	5	82	6	157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⁵⁾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⁶⁾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⁷⁾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

5)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에 해당하는 39명 중 34명에 대하여 해임을 하였으나, 5명은 해임 조치하지 않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8)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37건 92명의 지급신청 서류⁹⁾가 미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 2022. 1. 1.)」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¹⁰⁾ 규정에 해당

9) 지급신청 관련 서류

①소집 관련 계획서, ②소집 관련 결과보고서, ③소방출동(활동) 기록부(활동일시 확인), ④소집수당 신청서

10)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1.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2. 소방활동 유공으로 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
3.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대원. 다만, 이 경우 대원의 2년 이상 근속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소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를 추천·선발하여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장학금 환수)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¹¹⁾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및 소방활동 유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헌신한 대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녀장학금을 선지급 받고 사직서 제출로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사직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출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7조(임무),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과 재난현장 출동 등에 관하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각종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

11) 제8조(지급정지)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거나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집수당 등)」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소집수당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후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시 소방서장의 소집명령(계획문서), 소집명령에 따른 결과(결과보고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 등을 제출 받아 임무를 수행한 시간 및 인원 등 활동내역을 확인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행위 당시 ○○소방서 ○○○○과 ○○○○팀장 ○○○과 업무담당자 소방○ ○○○은 “○○군청 ○○○○○○○○-○○○○(2022.9.15.)호「○○○ 꽃밭 임시주차장 근무지원 협조 요청」 공문서를 접수 후 ①계획문서를 수립하지 않고 각 센터 담당자에게 공람 조치하였고, ②지원활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시간을 하루 8시간이라고 통보, ③지원활동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의 명단 및 활동시간 미확인, ④○○군청 ○○○○○○○○와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에 관한 업무협의 미실시, ⑤지원 요청한 인원(1일 8명)보다 많은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수당지출, ⑥지원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미작성으로 실제 참석자 확인이 불가능, ⑦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였음에도 ○○군청 ○○○○○○○○에서 보낸 협조 요청 문서로 소집수당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1. 3.까지 (1년) ○○소방서 ○○○○과 ○○○○팀장으로, ○○소방서 ○○○○○○ 소방 ○ ○○○은 2022. 7. 11.부터 2023. 1. 3.까지(6개월) ○○소방서 ○○○○과 의 용소방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 꽃밭 임시주차장 근무지원 관련 소집수당을 지급하면서 계획문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의 명 단 및 활동시간 미확인, 결과보고서 미작성으로 실제 참석자 확인 불가능 등 소 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였음에도 부적정하게 소집수당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등을 위 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처분하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단, ‘4.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 산집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5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2,785,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과장은

[권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관련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이 발견됨에 따라 장학금 환수 세부 요건 마련 등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경고, 주의, 시정

제 목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과) 소방○ ○○○
③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표1]과 같이 총 349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위험물 제조소 등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옥외
349	-	61	49	1	-	11	288	1	148	10	22	97	1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8522호, 시행 2022. 12. 1.](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제6조,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73호, 시행 2023. 1. 5.]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¹²⁾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¹³⁾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¹⁴⁾(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변경)

12)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허가(변경)신청서
2. 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3.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4. 구조설비명세표
5.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6.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13)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14)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2층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가 법률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와 같이 4건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처리를 하면서 상치장소 옆 2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3.6m(법정거리: 5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등 4건의 설치·변경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위험물 주유취급소 화재안전조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 12. 1.]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9호, 시행 2023. 1. 3.] 제7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호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험물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15)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7조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3]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소 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요약 발췌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화재안전조사 시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2023. 4. 21.(금)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과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방화담 또한 무너져 있음에도 화재안전조사 시 주유취급소를 면밀히 검사하지 않아 「위험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철거 또는 허가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벌칙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다.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안내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¹⁶⁾,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또한 2022년 11월 소방본부에서 시달한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제출 독려” 17)에 따르면 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관계인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각 소방서에서는 정기점검 제출 대상에 대한 안내문 재 발송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제출대상에 대해 다시 확인한 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결과 제출대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총 3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대상 안내를 누락하여 해당 제조소 등이 정기점검 실시하지 못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과 소방○ ○○○는 2020. 5. 8.부터 2021. 7. 4.까지 ○○소방서 ○○○○과에 근무하면서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17) 道 예방안전과-15831(2022. 11. 7.)호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독려」

2021년 6월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시 ○○주유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화담이 붕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원상복구 또는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과에 근무하면서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과 소방○ ○○○은 2022.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 하면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업무담당자로서 도 ○○○○과-○○○○○ (2022. 11. 7.)호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독려” 와 관련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관계인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점검 제출 대상에 대한 안내 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일반취급소가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대상임에도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화담이 붕괴되어 있었음에도 검사를 소홀히 한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방○ ○○○ 및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대상임에도 안내를 소홀히 한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하여 이를 철거 또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통보, 권고

제 목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표1] 현장방염성능검사 및 성적서 발급 현황

(단위 : 건)

계	2023. 1. 1. ~ 현재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 6. 1. ~ 12. 31.
35	2	2	2	4	10	7	8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방염성능검사 시험체 제출 부적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12. 1.]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1호, 시행 2023. 3. 7.] 제3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¹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 가운데 합판·목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시행 2022. 11. 1.] 제3조에 따르면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고,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험체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 소방청에서 시달한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자료 제출 강화 지침 알림”¹⁹⁾에 따르면 방염물품(대상물품, 처리방법, 면적), 사용 방염제(형식승인번호, 합격표시번호) 확인하여 대상물품별(합판·목재 종류별, 같은 종류라도 두께별 구분 필요), 처리방법별(방염도료 종류별)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18) 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라. 전사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마.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19) 청 소방산업과-1905(2022. 6. 2.)호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자료 제출 강화 지침 알림」

하며, 각각 1개 이상의 시험체를 제출하여 방염성능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접수하면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험체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 제출하였는지 확인 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방염성능검사 시험체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하며 처리방법별(방염도료 종류별)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의 시험체가 제출하였어야 하나 방염도료 종류별 구분 없이 시험체 하나만 제출하였음에도 시험체를 추가 요구하지 않는 등 3건에 대하여 제출된 시험체만 방염성능검사를 하는 등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현장방염처리물품 표준 시공명세서 확인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12. 1.]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1호, 시행 2023. 3. 7.] 제3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 가운데 합판·목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시행 2022. 11. 1.] 제3조에 따르면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고,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험체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 소방청에서 시달한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자료 제출 강화 지침 알림”에 따르면 시공명세서에 대상물품·처리방법별 세부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방염성능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받은 처리면적(도료 1L 당 최대치로 처리가능한 면적)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접수하면 시공명세서에 작성된 형식 승인받은 처리면적(도료 1L 당 최대치로 처리가능한 면적)을 확인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방염성능검사 시공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료의 형식승인 받은 처리면적(도료 1L 당 최대치로 처리 가능한 면적)을 확인했어야 하나 도료사용량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합격표시 조회하여 처리면적을 확인한 바 처리가능 면적보다 실제 처리한 면적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염성능검사 첨부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통보] 추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과장은

[권고]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 각각 1개 이상 시험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명세서에 시료별 처리면적과 도료사용량을 통한 방염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경고, 주의, 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③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과)에서는 「○○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표1]과 같이 총 30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장치 (지상식 포함)
	300	273	0	27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적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28.) 중 확인한 결과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 총 19개소(2020년 5개소, 2021년 9개소, 2022년 5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

게 알려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 확인한 결과 ○○○○○호의 경우 2021년 3월 27일 제수변이 매몰 되었음을 확인하고도 고장 발생보고를 누락하였다가 2021년 7월 25일 고장발생보고를 하는 등 총 3개소에 대해 소방용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행위 당시 ○○119안전센터 ○○○는 관할 소화전 ○○○○○호와 ○○○○○호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동파우려로 인하여 미개방 점검을 하였다고 작성하는 등 소화전 관리소홀 및 조사부를 허위 작성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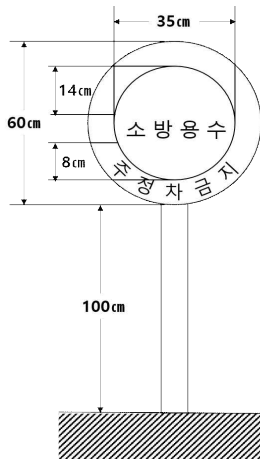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5] 소방용수표지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규격



-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자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재구성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항상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28.)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300개소(비상소화장치 27개소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개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것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보행안전법²⁰⁾」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노인보호구역 보도 중앙에 설치된 것·화단내에 설치된 것·펜스 안쪽에 설치된 것 등을 양호로 결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소방○ ○○○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보행안전법)

- 제2조(정의)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담당자 소명

2021. 7. 5.자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소화전 2개(○○○호, ○○○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담당소화전을 점검하여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점검시에는 항상 스펀들을 개발하여 수압상태와 배수상태 등 조사부 양식에 따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동파가 우려되어 스펀들을 개방하지 않고 외관상태만 점검하고 있는데 2022년 4월부터 동년 8월까지(6월은 공무상 병가 기간으로 점검 실시치 못함) 동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에는 스펀들 개폐여부에 ‘미개방(동파우려)’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점검시 스펀들 개방을 하고 배수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정작 보고서 작성시에는 전월 것을 복사하여 붙이기 하는식으로 방만하게 작성하여 보고서에 ‘스펀들(동파우려)’라고 기입하였습니다. 저의 안일한 보고서 작성으로 인하여 직장에 누가 된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보고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2) 소명에 대한 판단

소방○ ○○○는 4월 소방용수시설점검시부터 스펀들을 개방하고 배수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보고서 작성시 전월 것을 복사하여 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8월까지 동파가 우려로 스펀들을 미개방한 것으로 작성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명만으로 실제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소명이 불충분하고, 가사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소방용수시설점검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방○ ○○○

1) 담당자 소명

2021년 3월에 제수변 매몰을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음, 그 후에 6월경에 다시 한번 문의 한 바 고장 발생 보고를 하라고 하여 7월에 고장 발생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일 처리를 하려다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2) 소명에 대한 판단

고장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장사실을 즉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문서를 통하지 않고 전화로만 문의하여 소극적이고 절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 소방○ ○○○

1) 담당자 소명

2022. 6. 29. 담당 소방용수시설 및 지수리 점검을 나갔고 담당 소화전(○○○ ○○호) 점검한 바 스피들 고장으로 인해 출수불가 상태였으며 방수구 덮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호는 ○○센터 관할 소화전으로 관리전환된지 얼마 안 됐기에 정확한 위도·경도 및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장상태 확인 후 즉시 본서 용수 담당자에게 유선연락하여 관리전환 날짜 및 수도사업소에서 상태를 알고 있는지 문의하였고 본서 담당자는 확인 후에 연락을 주기로 하고 고장발생보고 문서 작성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본서 용수담당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렸으나 소화전 수리에 대한 답변 및 결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22년 12월까지 고장상태로 소방용수점검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점검부 미작성에 대한 소명자료로 고장발생보고 문서를 첨부합니다.

2) 소명에 대한 판단

고장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조사부에 근거를 남기고 고장발생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2. 7. 5.자 작성된 고장발생보고서를 보면 2022. 6. 29. 고장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2022. 7.부터 소방용수설점검부에 사용불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자 소명이 인정된다.

라. 소방○ ○○○

1) 담당자 소명

해당 소화전 ○○○○○호는 패킹 노후화로 인한 누수였지만 매월 점검해본 결과 사용(양호)가능 상태로 출수 및 압력상태 양호하였으며 패킹 노후화로 인한 출수 불가능 상태가 아니었음. 주변 주민들 민원으로 소화전 보호틀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점검해본바 당시에 흔들림이 있었고 이 내용을 당시 본서 용수담당자와 통화한바 곧 지반공사 들어갈 것이라 그때 같이 수리하면서 보호틀 또한 고치기로 했었음, 그래서 인지만 하고 있고 따로 고장발생보고 올리지말라고 안내받은 상태였음 후에 지반공사하여 소화전 보호틀 흔들리는 것 또한 수리 완료 및 누수 수리완료 되어 9월에 공사완료 후 수리완료보고 하였음.

2) 소명에 대한 판단

고장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장사실을 전파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매월 작성하는 소방용수조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2022. 4. 6. ○○119안전센터-○○○○호로 작성된 누수로 인한 고장사실을 매월 작성하는 소방용수조사부에 기록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책임은 인정된다.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소방○ ○○○는 2021. 7.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1년 10개월) ○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용수시설 ‘○○○○○호, ○○○○○호’에 대한 소방
용수조사부를 작성하면서 동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5월, 7월, 8
월 소방용수조사부를 동과우려도 미개방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
홀히 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3. 1. 3.까지
(2년)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용수시설 ‘○○○○○호’에 대한 소
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면서 2021. 3. 제수변 매물로 인한 고장사실을 인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약 4개월이 경과된 2021. 7. 25. 고장발생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2. 3. 8.부터 2023. 2. 19.까지
2022.(11개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용수시설 ‘○○○○○’가
2022. 4. 5. 패킹노후로 인한 누수로 고장발생 보고되었으나 2022. 4. 16.부터 2022.
9. 14.까지 고장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양호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담당 소방용수시설(○○○○○호, ○○○○○호)에 대하여 소방용수조사부를 동절기가 아님에도 수개월 간 동파우려로 미개방 점검하였다고 작성하여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담당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고장발생보고를 누락한 소방○ ○○○과 고장 소화전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를 사용가능으로 작성한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및 소화용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용수시설을 ○○군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 시정, 권고

제 목 공기충전기 점검 및 용기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⑥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119안전센터)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활동 대원의 호흡보건 안전확보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훈령 제2021-240호)」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확보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28.) 중 ○○소방서(○○○○○)의 공기호흡기 용기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기호흡기 용기 총 254개에 대하여 재검사기간²¹⁾이 도래 하였음에도 용기 20개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34개는 재검사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3개월 경과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및 그 성능을 유지하려는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공기충전기 관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및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는 공기충전기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상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3. 4. 19. ~ 4. 28.) 중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장비담당자는 매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총 38회에 걸쳐 5회는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33회는 작동점검 시간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는 등 항상 그 성능을 유지하려는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관련자 의견 없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소방○ ○○○, 소방○ ○○○은 2023. 1.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4개월), 소방○ ○○○은 2022.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10개월)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마다 용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총 20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검사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소방○ ○○○은 2019. 6. 4.부터 2021. 1. 1.까지(1년 7개월) ○○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8. 6.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소방○ ○○○은 2018. 7. 2.부터 2021. 1. 1.까지(2년 6개월) ○○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8. 13.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7. 10.까지(1년 6개월) ○○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1. 25.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 소방○ ○○○은 2019. 1. 7.부터 2022. 1. 16.까지(3년) ○○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충전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0 .1. 공기호흡기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공기호흡기 용기 20개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소방○ ○○○, 소방○ ○○○, 소방○ ○○○과, 공기충전기 주간점검을 미실시한 소방○ ○○○, 소방○ ○○○, 소방○ ○○○(용기재검사 미실시 건과 병합하여 주의),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공기호흡기 용기 20개에 대해 즉시 재검사를 실

시하여 주시고, 각 센터별 공기충전기 주간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과장은

[권고] 공기호흡기용기 검사 기한 초과 및 공기충전기 정기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